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08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강선우 • 박지원 • 임오경

위성곤 · 서미화 · 전현희

김동아・김 윤・진성준

천준호 · 김윤덕 · 조승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 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,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제4항·제89조제4항 신설,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, 신용카드 발급,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・배제・분리・거부(이하 "차별행위"라 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9조의3(시정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별행위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의 신청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
- 2.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- 3.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
- 4.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차별행위를 한자(이하 "차별행위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1. 차별행위의 중지
- 2. 피해의 원상회복
- 3.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
- 4.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 고부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,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9조의4(의견진술의 기회 부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

주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,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제69조의5(시정명령의 확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 정명령은 확정된다.
- 제69조의6(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-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 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  - ② 제69조의5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권익보호) ① ~ ③ (생	제69조(권익보호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
	자는 금전대출, 신용카드 발급,
	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
	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
	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
	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
	<u>을</u>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
	(이하 "차별행위"라 한다)하여
	<u>서는 아니 된다.</u>
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	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
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	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<u> &lt;신 설&gt;</u>	제69조의3(시정명령) ① 보건복지
	부장관은 차별행위로 「국가인
	권위원회법」 제44조의 권고를
	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
	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
	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
	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

- 우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 람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의 신 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- 1.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- 2.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- 3.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
- 4.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차별행위 를 한 자(이하 "차별행위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.
- 1. 차별행위의 중지
- 2. 피해의 원상회복
- 3.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
- 4.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

<u>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에 비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시정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,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4(의견진술의 기회 부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9조의 3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 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, 진정 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69조의5(시정명령의 확정) ①

제89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

① (생략)

② <u>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 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.

제69조의6(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)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 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한다.

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 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제89조(과태료) ① 제69조의5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.

-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	
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부과	
· 징수한다.	